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주시장 박 재 환

1976년 2월 9일

경주시규칙 제 239호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 4 조 내지 제 8 조의 단서 규정에서 “시장이 주위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지정한 경우”라 함은 대지 주위의 기존건축물과 조화가 되며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규모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와 표준설계도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건축물의 용도) ① 불국사 제 5 종 미관지구내 점포가구의 건축물의 동별 세부 용도는 별표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지정한 점포 가구의 건축물의 세부용도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건축물의 높이) ① 제 2 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인접 건물의 최고 높이보다 1 미터 이상을 초과하거나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주위환경 및 도시미관상 저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 2 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층별 높이는 당해 대지의 조건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다.

③ 제 3 종 내지 제 5 종 지구의 대지의 지반고(地盤高)는 인접도로변으로부터 0.2미터 이상 0.3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 5 조(건축물의 설계 기준) ① 조례 제 10 조 제 4 항 및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구조형태 설비 및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의하여야 한다.

1. 제 2 종 미관지구

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는 현대식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위환경 및 도시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담장은 투시형을 원칙으로 하며 그 형태는 시장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담장의 높이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한다.

라. 건축물의 위생시설은 수세식으로 한다.

2. 제 3 종 내지 제 5 종 미관지구

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로 또는 조적조(組積造)인 경우에는 외형 및 구조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에 조화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지붕의 형태는 합각(合角)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처마 끝으로 이루는 선은 곡선으로서 한국 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다. 지붕의 이음재(材)는 재래식 토기와(골기와) 또는 청기와로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서까래의 길이는 건축물의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벽면 하단 부분과 서까래 또는 부연말구(付椽末口)와의 앙각(仰角)은 65도 이하이어야 한다.

마. 불국사 제 5 종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위생시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바. 대문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에 의한 형태 및 고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붕 형태는 합각 또는 맞배지붕으로서 재래식 토기와(골기와)로 이어야 한다.

사. 담장은 사괴석(四塊石) 또는 자연석 쌓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부는 재래식 토기와(골기와)로 이뤄야 한다.

다만, 벽돌 또는 부록조로서 담장의 외벽면을 시장이 지정하는 문양(紋樣)과 색채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담장의 높이는 지반면(地盤面)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미만이어야 한다.

자. 골뚝은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에 조화되는 구

조로서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건축물의 외부 색채는 삼원색(三原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3 종 내지 제 5 종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에 의한 건축 구조물의 세부형태 및 규모가 당해 건축물의 조화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규제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정원의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내에는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한 정원에는 3평방미터당 1주 이상의 정원수(수고 1.0미터 이상)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상록수이어야 하며 식수부적기(1~3월, 6~8월)에는 식수 적기까지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7 조(건축물의 전면 화단 설치) ① 제 2 종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1.2층에는 화단이나 화분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화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3 종 내지 제 5 종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도로에 직접 면한 건축물의 전면에는 적당한 규모의 화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표준설계도)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표준설계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포가구내 동별세부용도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

동별	층 별	용 도
1	1·2지하	토산품, 기념품
2	1층	기념품, 사진, 다과류, 양품, 금은보석
3	1층	기념품, 사진, 다과류, 양품, 의약품
"	지하	기념품, 식료품, 이미용, 세탁, 간이음식
"	"	(점포내에서 입주 영업금지) 일용잡화
4	1	기념품, 사진, 양품, 다과류
"	지하	기념품, 식료품, 의약품, 세탁, 다과류
"	"	이미용, 간이음식, 일용잡화
5	1	기념품, 다과류, 사진, 일용잡화
6	1	토산품, 기념품